

제7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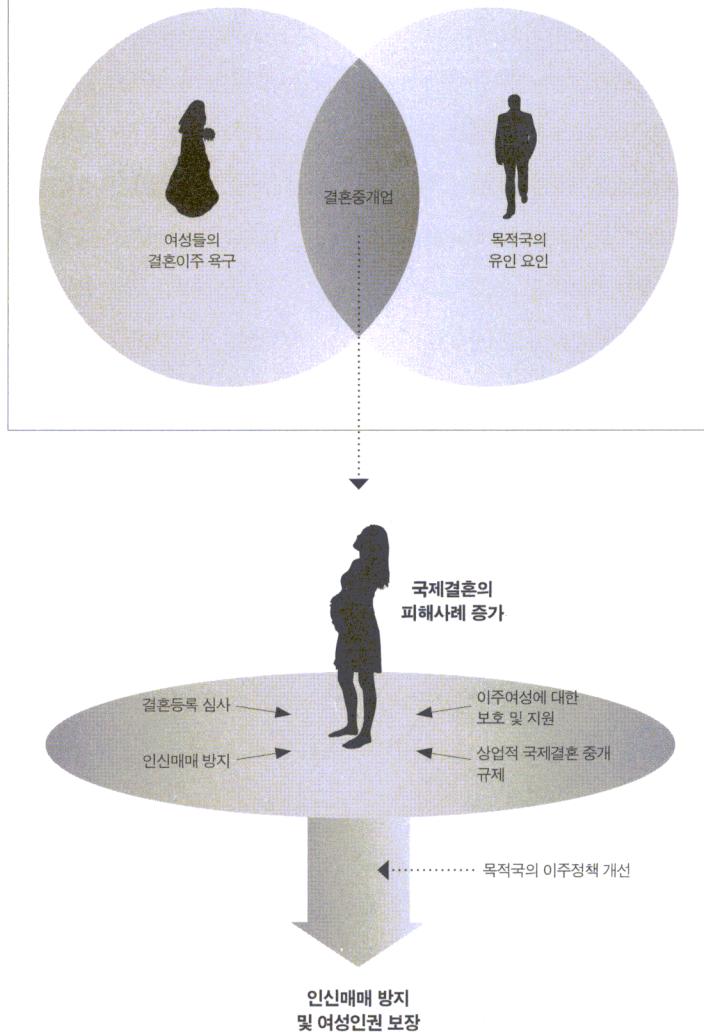
베트남과 필리핀의 결혼이주 관련 정책 연구

Analyzing the Policies Related to Marriage Emigration
— Cases of Vietnam and the Philippines

위선주 | 서울대학교 여성학협동과정 박사수료

이 글은 필자의 석사학위논문『아시아 결혼이주체제에서의 출신국 정책 연구: 필리핀, 베트남, 몽골을 중심으로』(2009)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이 글의 일부는『여·성이론』22호(2010, 여름)에 게재된 “아시아 결혼이주체제에서의 출신국 정책 연구: 필리핀, 베트남을 중심으로”에서 발표된 바 있다.

글로벌 자본주의 + 글로벌 가부장제



결혼이주여성

출신국 정부가 자국민의 국제결혼

및 결혼이주와 관련하여 시행하고

있는 법적, 행정적 정책 및 절차와 같은 결혼이주 관련 정책을 이 글은 연구한다. 여기에는 국제결혼 자체와 관련된 제도적 장치뿐 아니라 국제결혼을 둘러싼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한 규제, 자국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한 보호·지원책 등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출신국의 결혼이주 관련 정책이 갖는 특징을 규명하고, 이 정책들이 결혼이주 현상 및 결혼이주여성들의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캄보디아에 이어 두 번째로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국제결혼의 비율이 높은 베트남은 결혼등록 과정에서의 인터뷰를 통한 불법 중개업체에 대한 제재와 준정부기관에 의한 국제결혼증개 및 지원 등을 통해 국제결혼 과정에 대한 국가 관리 영역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결혼이주 관련 정책을 형성해왔다. 어느 국가보다 오랜 이주 정책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필리핀은 상업적 국제결혼증개 금지와 함께 다른 형태의 이주자들에 대한 지원 제공과 같은 맥락에서 모든 결혼이주여성에 대해 사전 정보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결혼이주여성의 역량 강화를 지향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목적국의 정책이 이주의 성격과 실태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결혼증개업 허용과 출입국 관리 정책은 출신국에서는 불법화되어 있는 결혼증개업의 성행과 탈법 행위, 그리고 자국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보호 정책의 강화 혹은 약화를 야기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의 안전한 이주와 안정적인 정착이라는 관점에서 출신국과 목적국 간 정책 조율과 협력이 필요하며, 특히 상업적 국제결혼증개업 허용 정책에 대해 재고(再考)해볼 필요가 있다.

This paper studies the policies related to international marriage and marriage emigration—legal and administrative policies and procedures—implemented by the governments of the countries from which

marriage migrant women originate. Such policies range from the system related to international marriage itself to regulations on illegal acts in arranging international marriage and measures to protect and support women who emigrate abroad for marriage. Investigat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marriage emigration policies of the “countries of origin,” this paper identifies the influences of such policies on the marriage migration phenomenon as well as the experience of marriage migrant women. Vietnam, country of origin of the high ratio of marriage through marriage brokerage in Korea only after Cambodia, has expanded the government’s intervention in international marriage process; mandatory interviews are conducted for marriage registration to stop illegal brokers while arrangement and support for international marriage are provided by quasi-government organizations. The Philippines, a country with the long history of migration policies, has banned commercialized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age while aiming to empower female marriage emigrants by offering useful information and counseling, which is a part of its comprehensive emigration support service. Against the backdrop of the policies of the destination country being a greater influence upon the nature and reality of migration, the Korean government’s immigration policies and its approval of marriage brokerage lead to evasion of law and prevalence of illegal marriage brokerage in the countries of origin and their governments’ strengthening or weakening of the policies designed to protect their marriage emigrants. Under the goal of promoting safe migration and stable settlement of marriage migrant women, the policy that allows commercialized international marriage bro-

kerage needs to be reconsidered and countries of origin and destination must cooperate and coordinate their policies.

KEY WORDS 결혼이주 marriage emigration, 출신국 정책 policies of countries of origin, 국제결혼중개업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age, 여성인권 women's human rights, 베트남 Vietnam, 필리핀 the Philippines

I 서론

1. 문제 제기

이 글은 아시아 내 결혼이주여성들의 주요 출신국인 베트남과 필리핀 정부가 자국 여성의 국제결혼¹ 및 결혼이주와 관련하여 시행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결혼이주 관련 정책에는 국제결혼 자체와 관련된 제도적 장치뿐 아니라 국제결혼을 둘러싼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한 규제, 자국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한 보호·지원책 등이 포함된다.

2000년대 들어 한국 남성과 아시아 여성 간 국제결혼이 급증하면서 언어적·문화적 난관을 비롯하여 남편 및 시댁 가족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갈등, 그리고 결혼중개업체(자)로부터의 피해 등 결혼이주여성들이 겪는 다양한 문제점과 피해 사례들이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 이에 대응하는 한국 정부의 정책은 대부분 결혼이주 여성의 인권 보장보다는 결혼이주여성의 한국 사회로의 일방적인 적응 및 ‘정상가족’의 유지 등에만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이주여성지원단체들은 무엇보다 인신매매성 결혼을 없애고 매매婚姻적 결혼을 차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1 국제결혼은 ‘국적이 다른 남녀 간의 결혼’으로, 그 양태는 매우 다양하다. 결혼이주여성 출신국의 결혼이주 관련 정책을 다루는 이 글에서는 결혼중개업을 매개로 ‘외국인 신부’가 남성 배우자의 국가로 이주하는 형태의 국제결혼에 초점을 맞춘다. 결혼중개업은 결혼을 시장의 논리 안으로 포섭하여 거대한 산업을 이루고 있으며, 국가는 국제결혼중개 산업의 관리와 규제라는 차원에서 이전까지 사적 영역으로 간주되어 온 결혼에 개입하고 있다.

(권미주 2010; 한국염 2006).

이러한 주장은 결혼이주여성들이 이주 및 정착 과정에서 직면하는 어려움들이 대개 국제결혼이 성립되는 과정 자체에서 배태된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피해 사례들은 대부분 결혼중개업을 통한 결혼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현재의 관행화된 국제결혼중개 방식은 비용 전액을 지불하는 남성의 이해와 욕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최대 이윤의 추구라는 시장 논리에 의해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들은 결혼 과정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형태의 인권 유린에 대해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07, 6).

그런데 문제의 근원으로 지목되는 이 ‘국제결혼이 성립되는 과정 자체’는 여성들의 출신국 내에서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성에 대한 인권 침해나 불법 행위에 대해 해당 국가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제결혼 및 이에 뒤따르는 이주 과정은 단순히 두 당사자 간의 문제라기 보다는 국적이나 이민, 노동, 시민권 등에 관여하는 양 국가의 법률과 제도가 관철되는 통치의 영역에 놓여 있다. 국제결혼 희망자들은 이러한 제도들에 의해 규제를 받거나 협상을 벌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초국적 연결망의 형태로 활동하는 결혼중개업체(자)들은 두 관련 국가의 개인들을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점에서 현재의 국제결혼을 사회적 의제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이주 시스템이 구축되는 체제의 글로벌하고도 로컬한 차원을 모두 문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며(김현미 2006, 11-12), 이 체제의 한 구성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 결혼이주여성 출신국의 법과 제도, 정책에 대해서

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결혼이주여성 출신국의 결혼이주 관련 정책 연구는 한국의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결혼중개업관리법”)과도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 이 법은 결혼중개업이 신고제에서 자유업으로 전환되면서 업체 수의 급증과 함께 이로 인한 각종 폐단 및 ‘위장결혼’ 등 사회문제가 증가하자 건전한 결혼문화의 형성에 기여하기 위한 법적 규율을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2007년 제정되었다 (한국다문화가족정책연구원 외 2011, 39). 그러나 “결혼중개업관리법”은 결혼중개 행위가 합법적인 상행위로 인정받기 위해 근본적으로 요구되는 “상대방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에 대해 침묵하고 있으며,² 인신매매적 국제결혼중개 행태에 대한 규제 및 결혼이주여성들이 결혼중개업체(자)로부터 겪을 수 있는 피해에 대한 예방과 구제에 있어 미비점을 지니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소라미 2009, 19-21). 법 제정 시 국제결혼중개업자에게 외국 현지법령 준수 의무를 부과하였던 것에 더해 2012년 개정에서 미성년자 소개 금지, 집단 맞선 금지, 현지 여성 기숙 금지 등의 조항을 신설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법은 ‘합법’이라는 명목하에 문제적 국제결혼중개 행위를 조장해온 측면이 있으며 이에

2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에게 서로의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은 2010년 개정을 통해서야 신설되었다(제10조의2). 또한 이러한 신상정보에 대한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 의무화는 2012년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다. 서로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신상정보는 1. 혼인 경력, 2. 건강 상태(후천성면역결핍증, 성병 감염 및 정신질환 여부를 포함한다), 3. 직업, 4.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매매 알선 및 강요 관련 범죄 경력과 최근 10년 이내의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경력, 5. 그 밖에 상대국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다.

대응하여 결혼이주여성 출신국 정부는 이를 규제하고 자국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발전시켜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결혼중개업관리법”이 한국만이 아니라 국제결혼과 관련된 여타 나라들에서 갖는 영향력을 이해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데 있어서도 결혼이주여성 출신국의 정책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베트남과 필리핀의 경제적, 사회적 맥락 속에서 결혼이주가 추동되는 현상을 설명하고 이에 대응하여 결혼이주 관련 정책이 형성되어 온 과정을 밝힌다. 그리고 실제 정책의 내용과 그것이 갖는 의미, 그리고 이 정책들이 결혼이주 현상 및 결혼이주 여성들의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나아가 출신국과 목적국의 정책이 서로 경합하거나 협력하는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여성들의 보다 안전한 이주와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필요한 방안을 모색한다.

2.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국내 거주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은 날로 그 수가 증가하고 있지 만 이 글에서는 베트남과 필리핀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베트남은 중국(한국계 중국인 포함)을 제외한다면 한국 남성들이 가장 많이 국제결혼을 하는 나라이다. 또한 결혼 경로를 살펴보면 결혼중개업체(자)를 통한 비율이 캄보디아(75.7%) 다음으로 높아 여성들 가운데 65.8%가 결혼중개업체(자)를 통해 결혼이주를 해오고 있다(여성가족부 2013, 457).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

는 결혼중개업에 의해 단기 속성으로 이루어지는 국제결혼은 결혼의 불안정성의 요소가 클 수밖에 없으며, 이는 베트남 여성과의 이혼 건수가 2003년 28건에서 2012년 1,992건으로, 전체 외국인 여성과의 국제결혼 이혼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1%에서 25.3%로 급증한 것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통계청 2013). 또한 故 레티김 등(2007년 3월), 故 후안마이(2007년 6월), 故 쩐타인란(2008년 3월), 故 탓티황옥(2010년 7월), 故 황티남(2011년 5월), 故 팜티로안(2012년 3월) 등 남편의 폭력으로 인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들의 충격적인 죽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김남주 2012). 이처럼 결혼중개업을 통한 국제결혼 및 정착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국 여성들에 대한 심각한 인권 침해 사례들이 알려지면서 베트남 정부는 관련 정책들을 잇달아 입안, 시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과정이 특히 한국의 결혼중개업에서 비롯하는 측면이 크다는 점에서 한국과 베트남 간의 관계 속에서 베트남의 결혼이주 관련 정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필리핀은 전체 인구의 10%가 넘는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으며, 스리랑카와 더불어 아시아에서 해외이주 및 여성이주를 주도하고 있는 국가이다. 이러한 상황을 글로벌 노동 시장에 의한 국가 정부의 와해로 평가하는 시각도 있지만(파레냐스 2009, 94), 달리 보면 자국 영토 내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으로 경계 지어져 있던 근대 국가의 역할이 이제 탈영토화되어 해외이주를 국가의 핵심 정책 가운데 하나로 다루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필리핀은 이러한 변화를 잘 보여주는 국가 중 하나이며 실제로 자국민의 해외이주와 관련된 정책과

제도를 일찍부터 마련해왔다. 노동력 송출 정책을 주요 발전 정책으로 삼으면서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정부 시스템과 해외이주노동자들을 보호할 장치를 구축해온 것과 마찬가지로, 필리핀 정부는 자국 결혼이주여성들이 늘어나고 이들에 대한 인권 침해 사례가 알려지자 국제결혼과 관련된 범죄 행위들을 근절할 법과 제도들뿐 아니라 결혼이주여성들을 보호·지원할 수 있는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왔다. 필리핀은 최근 국제결혼이 중요한 사회적 의제로 떠오른 국가들이 국제결혼 관련 정책을 입안하는 데 있어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는 주요 국가 중 하나라는 점에서 연구 대상으로서의 가치가 있다.

2) 연구 방법

이 글의 연구 방법은 문헌 연구가 주를 이루며, 현지 조사 및 전문가 인터뷰를 병행하였다.

문헌 연구의 1차 자료는 베트남과 필리핀의 결혼이주 관련 법률 및 정책 자료이다. 이는 해당 정부 및 정부기관의 공식 웹사이트와 보고서를 통해 수집하였다. 또한 한국 정부의 정책 자료 및 보고서에서 해외 사례 및 동향을 소개한 내용을 참고하였다. 2차 자료는 각국의 결혼이주여성 및 이주 현상을 다룬 학술 논문, 결혼이주 관련 학술 행사와 NGO 주최 토론회 자료집 등이다. 2차 자료를 통해 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결혼이주의 전체적인 상 및 결혼이주를 둘러싼 각국의 정치·경제·사회적 상황, 해당 사회의 전반적인 이주 현상 속에서 결혼이주 관련 정책이 차지하는 위상 및 그 의미 등을 파악하였다.

현지 조사는 베트남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2008년 12월 3일부터 5일까지 유엔인권정책센터의 ‘결혼이민자를 위한 현지 사전교육’ 사업 평가단의 일원으로 참가하여 이루어졌다. 사업 평가단의 일정으로 주베트남 한국 대사관과 주호치민 한국 총영사관, 호치민시 대만경제문화사무소(Taipei Economy and Culture Office, TECO)를 방문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수집된 정책 자료와 인터뷰 자료를 이 글의 보조 자료로 활용하였다.

전문가 인터뷰는 문헌 연구와 현지 조사에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진행하였으며, 인터뷰 자료 역시 이 글의 보조 자료로 활용하였다. 인터뷰는 2008년 11월과 2013년 7~8월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2008년 11월 인터뷰는 이 글의 바탕이 된 석사학위논문을 위한 것이었으며, 2013년 7~8월 인터뷰는 이 글을 위해 추가로 진행한 것이다. 인터뷰 대상자 및 시기, 방식은 <표 1>과 같다.

표 1. 전문가 인터뷰 대상자

연번	직책	시기	방식
A	필리핀 이주공사 이주자통합교육부(Migrant Integration and Education Division) 직원	2008. 11	서면
B	주필리핀 한국 대사관 비자 담당 영사	2008. 11	서면
C	필리핀 파견 국제결혼이민관	2008. 11	서면
D	‘결혼이민자를 위한 현지 사전교육’ 필리핀 현지 코디네이터	2013. 7	서면
E	‘결혼이민자를 위한 현지 사전교육’ 베트남 현지 코디네이터	2013. 7	면담
F	‘결혼이민자를 위한 현지 사전교육’ 한국 코디네이터	2013. 8	서면

3. 이론적 배경

이 절에서는 베트남과 필리핀의 결혼이주 관련 정책에 대한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를 위해 필요한 이론적 배경을 다룬다. 우선 여성의 해외이주를 추동하는 배경과 실제 이주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들을 전 지구적 차원의 이주의 여성화 현상 속에서 분석하고, 여성들의 이주 경로로서 노동이주와 결혼이주 간의 관계를 검토한다. 그리고 여성의 이주 선택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두 축인 여성의 행위성 및 이를 둘러싼 구조적 조건을 함께 다룰 수 있는 이론적 설명을 이주체제 개념을 통해 탐색한다.

1) 국제결혼과 여성이주

지구화가 진전되고 사람들의 이동이 늘어나면서 국제결혼 역시 증가하고 있다. 국제결혼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지만,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급증하고 있는 것은 결혼중개업을 매개로 하여 이주의 형태를 띠는 국제결혼이다. 이러한 형태의 국제결혼에서 여성은 흔히 남성이 선택하는 ‘상품’으로 취급되고, 결혼에 매매형적 속성이 일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여성의 입장에서는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찾아 보다 잘 사는 나라로 ‘이주’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에서 결혼은 다양한 이주 경로 가운데 하나로 선택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시각이 있다. 국제결혼은 사실상 여성이주의 특정한 형태, 즉 ‘결혼이주’이며 이에 따라 국제결혼의 증가는 이주의 여성화 현상의 일부를 이룬다는 것이다.

‘이주의 여성화(feminization of migration)’는 개별 주체로 이

주하는 여성의 전제 이주자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으며, 저개발국 여성들이 전통적으로 ‘여성의 일’로 간주되던 노동을 하기 위해 보다 잘 사는 나라로 이주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이주여성의 출신국과 목적국의 측면에서 각각 찾아볼 수 있다. 출신국 측면에서 이주의 여성화 현상은 경제적 지구화에 대응하는 저개발국가의 발전 전략과 맞물려 있다. 저개발국가의 국민들 앞에 놓여 있는 해외 일자리는 남성보다는 여성을 위한 선택지이기 때문에 공동체 전체의 생존을 지탱하기 위해 여성들이 이주에 나서게 된다(엄혜진 2009, 256). 또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여성들은 훈련이나 취업에서 배제되어 빈곤한 상태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기’를 극복하는 적극적인 방식으로 해외이주를 선택하기도 한다(Kofman 외 2000; 김현미 2006, 15에서 재인용). 목적국에서는 서비스 경제 체제로의 전환과 함께 발생한 저임금 노동에 대한 수요가 이주여성들을 불러들이는 강력한 흡입 요인으로 존재한다.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 만들어진 수많은 저임금 직종들은 가사노동자, 식당과 호텔의 반숙련 서비스 노동자, 성적 서비스 노동자, 엔터테이너 등 성(그리고 인종)차별화된 노동 시장에서 역사적으로 여성에게 할당된 직업이었다(파레냐스 2009, 414). 이런 식으로 저개발국에서의 생존의 여성화와 선진국에서의 (저)임금노동의 여성화가 맞물리면서 전 세계적으로 거대한 여성이주의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Sassen 2002).

이주의 여성화는 선진국으로 향하는 저개발국 여성들의 노동 이주뿐 아니라 이주를 동반하는 국제결혼에 의해서도 견인된다. 그런데 여성들의 결혼이주는 그 동기와 양태, 결과에 있어 노동이

주와 명확히 구분하기 힘들며 서로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 이주 방식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지적들이 있다. 최근 다양한 형태의 국제 결혼 가운데 이주노동의 성격을 띤 국제결혼이 두드러진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는 한국, 일본, 대만 등과 같이 이주노동의 규모와 분야, 이주 기간에 제한을 두고 이주노동자의 사회적 통합보다는 재송출을 목표로 하는 나라들에서 더욱 그러하다. 이 경우 이주와 정착이 엄격히 제한된 상태에서 '결혼'이 합법적인 방식으로, 게다가 상대적으로 비용도 적게 들이면서 국경을 넘어 경제적, 법적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활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김현미 2006, 15-16; Piper 외 2003). 결혼이주와 노동이주라는 분석적 범주의 구분이 특히 이주여성의 정체성 차원에서 흐릿하다는 지적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Piper 외 2003). 여기서는 여성들의 이주를 이주노동자, 특히 가사노동자나 돌봄 제공자로서의 역할로만 논하는 것이 어머니나 아내 같은 그녀들의 다른 역할을 보이지 않게 한다는 점이 중요하게 부각된다. 반면 결혼이주자 혹은 '우편주문신부'는 영원히 '신부'로 이름 붙여지거나 범주화될 뿐, "여성"이나 노동자, 정치적 행위자, 문화적 매개자로 인식되지 않는다. 그러나 여성의 생애주기 안에서 결혼과 노동, 이주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많은 여성들은 원래 노동이주자인데 부분적으로 비자와 노동허가의 일시적인 계약 속성 때문에 목적국에서 법적으로 안전하게 머물고자 하는 전략으로 현지 남성과의 결혼을 시도하거나(노동자가 아내로 변하는 시나리오), '결혼이주자'로 이주한 다음 노동 시장 진입을 시도한다(아내가 노동자로 변하는 시나리오)(Piper 2007, 169).

이주의 여성화 현상을 견인하는 한 축으로 국제결혼을 바라보면 여성들이 다양한 형태의 이주 경로 가운데 국제결혼을 선택하는 과정을 문제 삼게 된다. 이주의 경로라는 차원에서 볼 때 결혼이주와 노동이주는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우며, 이때 여성의 선택은 그녀 앞에 놓인 제도적 선택지의 배치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여성이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선택 혹은 행위성과 함께 여성이주를 틀 짓는 다양한 차원과 형태의 구조적 조건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2) 이주체제와 이주이론

결혼이주를 선택하는 개별 여성들의 행위성과 이를 둘러싼 구조적 조건을 모두 고려하면서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결혼이주 현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 ‘이주체제’라는 개념은 이론적으로 유용한 자원을 제공해준다. 코프만 등(Kofman 외 2000)이 제안한 이주체제-이주제도-개별 이주자라는 분석적 구분은 개인과 구조로 양극화된 기존의 이주이론 논의를 넘어 로컬의 개인 차원에서부터 글로벌한 통치 차원까지 여기에 개입하는 사회문화적 배경, 개인의 결정, 이주 산업, 국가 정책, 국가 간 관계를 포괄하여 설명할 수 있게 해준다. 특히 ‘이주체제’는 전 지구적 차원에서 실제 이주가 일어나는 국가들 간의 관계, 여기에서 작동하는 법과 제도들의 영향을 포괄한다는 점에서 이 글에서 다루는 결혼이주 관련 정책을 분석하는 데 유용하다.

‘이주체제(migratory regime)’는 이주자라는 범주를 구성하는 글로벌한 통치체제를 의미하며, 이주에 관여하는 각국의 법이

나 제도의 속성, 출신국과 목적국 간의 관계, 이주자의 진입을 결정하는 조건, 목적국에서의 거주 및 고용에 관한 권리 등을 포함한다. ‘이주제도(migratory institution)’는 이주를 가능하게 하는 공식적인 국가 기구 및 알선·중개업, 비공식 네트워크, 국제적·일국적 NGO 등을 포함하며, 여기에서 경제적 이윤을 만들어내는 이주 산업의 규모가 결정된다. ‘개별 이주자’는 이러한 이주체제와 이주제도라는 구조적 조건과 더불어 그들 자신의 역사, 사회적 정체성 및 자원들을 기반으로 이주를 결정하는 개인들이다(김현미 2006, 16; Kofman 외 2000, 32). 이렇듯 이주체제, 이주제도, 개별 행위자는 이주 현상을 형성하고 있는 거시적, 중간매개적, 미시적 차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 다루는 아시아 지역 내 결혼이주에 대해 코프만 등 (Kofman 외 2000)의 이론을 적용해보면, ‘결혼이주체제’는 각국의 인구·이민 정책, 결혼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공식적인 법적 장치들과 국가 정책, 출신국들과 목적국들 간 역사적·정치적·경제적 관계 및 결혼이주 흐름에 대한 각국의 관리 정책 등으로 구성되는 통치체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결혼이주제도’는 결혼이주 관련 국가 기구, 국제결혼을 알선하는 상업적·비상업적 결혼중개업, 출신국과 목적국에 흘어져 거주하는 가족·친구·공동체 등으로 구성되는 인적 네트워크, 결혼이주자들을 지원하는 국제적·일국적 NGO 등을 포함한다. ‘개별 결혼이주자’는 자신이 속한 곳의 사회문화적 배경 및 자신(과 가족)의 고유한 역사 속에서 결혼이주를 결정하고 실행에 옮기는 개인을 가리킨다. 여기서 드러나듯 국제결혼 및 결혼이주를 둘러싼 법과 제도 등 출신국의 결혼이주 관

련 정책은 결혼이주체제의 한 구성요소를 이루고 있다.

II 국가 관리 강화를 지향하는 베트남

베트남의 결혼이주 관련 정책은 1986년 대외 개방 이후 20여 년 동안 결혼이주 흐름이 형성되어 온 역사 속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대외 개방, 특히 자본 시장의 개방 이후 물밀듯이 들어온 대만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결혼중개업이 성장하고 국제결혼이 급증하였으며, 10여 년 전부터는 한국으로의 결혼이주가 두드러진다. 베트남 정부는 포괄적인 결혼이주 관련 정책을 마련하기보다는 결혼중개업을 통한 국제결혼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이 사회적으로 부각될 때마다 이에 대응하여 결혼중개업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고 국제결혼을 국가 관리의 영역 안으로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정책을 형성해 왔다.

1. 결혼이주 관련 정책의 형성 배경

1) 도이 머이 이후 여성의 경제적 상황 악화

베트남 정부는 1986년 도이 머이(Doi moi)를 채택했는데, 그 핵심은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및 대외 개방이다. 이를 통해 베트남 정부는 생산성 증대를 꾀하고 비공산권 국가들과 새로운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도이 머이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1990년대 들어 베트남은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7.6%에 달했으며, 경제성장

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외자도 1998~2006년 동안 604억 7천만 달러(승인 기준)가 도입되었다(김선한 2007, 95-101).

그러나 이러한 성장 지표 뒤에 가려진, 도이 머이로 인한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그 중에서도 특히 양극화 현상은 가장 큰 문제이다. 도이 머이 이후 약 20년 간 꾸준히 이어진 경제성장으로 베트남 국민의 전반적인 생활수준은 향상되었으나, 도시와 농촌 간 경제 격차, 빈부 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김현재 2007, 229-230). 시장경제체제의 도입으로 이전까지 국가가 무상으로 지원하던 주택, 의료, 교육 등 공공 부문이 사유화되면서 그 부담은 고스란히 개별 가족이 떠안게 되었으며,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농민들은 토지를 잃고 실업 상태로 전락했다.

여성노동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경제성장으로 인해 여성들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노동 기회가 증가하고 있고, 농촌-도시 간 이주, 특히 제조업과 가사노동을 위한 여성들의 이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많은 경우 여성들은 집안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학교를 그만두고 집안일이나 다른 집의 가사일을 돋다가 이후에 공장, 특히 노동력 집약적 제조업 분야의 외국계 공장에 취업할 기회를 얻고 있다. 그런데 경제개발 시기 베트남의 도시 인구 변화를 살펴보면 한국이나 중국 등에 비해 그 변화의 폭이 매우 좁으며, 2004년 현재에도 노동력의 58%가 농업에 종사하고 17%만이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즉, 농촌-도시 간 활발한 이주와 산업 분야에서의 고용이 경제성장의 결과물을 재분배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베트남의 상황은 이러한 재분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실에서 베트남 여성들의 결

혼이주는 낮은 교육 수준과 기술 부족 등으로 인해 노동 기회에서 소외된 여성들의 가족 부양 전략이 국제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이현옥 2011).

2) 국제결혼중개 시장의 형성과 피해 가시화

베트남 정부가 1991년 자본 시장을 외국인에게 개방하자마자 아시아, 특히 대만의 중소 자본들이 대규모로 베트남에 몰려들었다. 이때 베트남 내 화교들은 대만인들은 물론 해외 거주 중국인들까지 포함하는 범중국인 종족성을 형성하여 이들이 베트남에 경제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용이하게 해주는 교량 역할을 담당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베트남 여성과 대만 남성 간의 결혼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국제결혼이 한 건 성사될 때마다 상당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결혼중개업은 기업, 조직, 개인 등 다양한 형태로 양산되었다(김현재 2007, 241-242).

국제결혼중개업이 성장하면서 대만 남성과 베트남 여성 간의 결혼 및 베트남 여성의 대만으로의 이주 역시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했다. 특히 2000년부터 대만의 대사관 역할을 하는 경제문화사무소(TECO)가 혼인거주비자 발급 절차를 완화하면서 대만 남성과 베트남 여성 간의 결혼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그런데 대만 남성과의 결혼 증가와 함께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알려지자 베트남 여성과 대만 남성 간의 결혼을 바라보는 베트남 내 여론이 급속히 악화되기 시작했다. 대만 남성과의 결혼 과정에서 집단 맞선, 혼전 동침 등이 이루어지고, 베트남 여성들이 대만으로 이주한 후 '결혼' 목적과는 다르게 노인이나 환자를 봉양하는 역할

로 이용되거나 대만인 배우자로부터 성매매, 인신매매, 가정폭력 등의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대만 남성과의 국제결혼을 바라보는 시선은 한층 더 싸늘해졌다(김현재 2007, 242).

베트남 정부는 이에 대응하여 베트남 여성과 대만 남성 간의 결혼등록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2002년 상업적 국제결혼 중개 금지를 골자로 하는 Decree 68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베트남 정부는 동시에 베트남 여성연맹 산하 결혼지원센터가 합법적으로 국제결혼을 중개,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2005년에는 Decree 68 시행 이후에도 베트남 여성과 외국인 간 결혼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인식 아래 국제결혼에 대한 국가 관리 및 법률 위반과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각 정부 부처의 역할을 상세히 규정한 Directive 03이 발표³되었다.⁴

3 Directive 03이 발표된 배경에는 특히 대만 남성과의 국제결혼이 자발적이고 진취적인 결혼이라는 원칙을 무시한 채 성급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일부 조직과 개인들이 주도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결혼중개 행위가 다양한 위장 형태나 복잡한 형태로 등장하면서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인식이 있었다. 대다수의 베트남 여성들이 배우자의 나라로 떠나기 전에 그 나라의 법률, 언어, 전통과 관습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하여 목적국 사회에서 안정된 삶을 사는 데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과 불행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도 목적국의 법률에 의해 적절하게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큰 문제로 받아들여졌다. Directive 03은 당장 3개월 안에 공안부가 베트남 여성들이 외국인을 소개받는 맞선 장소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시행하고, 불법적인 결혼중개를 검거하여 처벌하도록 하였다(제3조).

4 베트남의 법률 체계에서 국제결혼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은 “혼인가족법(The Marriage and Family Law)”의 제11장 ‘국외 요소를 포함하는 혼인과 가족 관계’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국외 요소를 포함하는 혼인과 가족 관계’에는 국제결혼 뿐 아니라 해외 거주 베트남인 간의 혼인과 가족 관계, 해외 입양 등의 사항도 포함된다. 이 법에 의하면 국제결혼은 베트남 법률과 베트남이 가입한 국제조약에

3) 속성 집단 맞선을 비롯한 결혼 과정의 사회문제화

2006년 4월 21일은 ‘4·21 조선일보 사태’라고도 일컬어질 만큼 베트남의 결혼이주 관련 정책에 있어 중요한 계기가 된 날이다. 이날 〈조선일보〉는 사회면에 “베트남 처녀들, ‘희망의 땅, 코리아로”라는 제목으로 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 간의 일대다 속성 집단 맞선 및 결혼 과정을 보도했다. 이 기사에서 베트남에서는 상업적 결혼중개가 불법이라는 사실이 적시되지 않았고, 한국 남성이 다수의 베트남 여성을 마치 상품처럼 ‘고르고’ 베트남 여성은 ‘골라지기’를 원하는 것처럼 묘사되었으며, “한국 왕자님들, 우리를 데려가 주오”라는 사진 제목에 더해, 신부를 고르고 있는 한국 남성 앞에 앉은 베트남 여성 10여 명의 얼굴이 아무런 여과 없이 드러났다는 점 등이 베트남인들의 공분을 샀다. 이에 대해 먼저 국내 베트남 유학생들이 항의를 시작했고 뜻을 같이한 한국의 여성단체들이 합세해서 “성/인종차별적 국제결혼중개업 광고 반대 캠페인”을 벌인 결과 한국은 물론 베트남에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노출시켰다. 베트남 현지에서는 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결혼중개에 대한 비판과 함께 반한(反韓) 감정이 전국적인 규모로 확산되었다. 베트남 여성연맹은 한국의 국무총리와 여성가족부 등 정부기관을 비롯하여 한국의 여성단체에 베트남 여성의 인격과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중단해줄 것을 요구하는 편지와 항의서한을 보냈으며, 〈조선일보〉

의해 보호받으며, 베트남인과의 결혼에서 외국인은 베트남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Decree는 베트남 정부에 의해 공포되는 것으로 “혼인가족법”의 해당 조항들의 구체적인 시행 방법을 규정하는 시행령에 해당한다. Directive는 상급 관청에서 하급 관청의 직무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내리는 지시이다.

에도 기사에 실린 여성들은 물론 베트남 여성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공안당국에 베트남 여성을 해외로 보내는 불법 결혼중개업체와 중개자들을 일망타진할 것을 요청했다 (김선한 2007, 86-91; 남종영 2006; 마경대 2006; 채승우 2006).⁵

이러한 배경 위에서 국제결혼 등록과 관련된 규정과 절차를 한층 더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Decree 69가 공포되었다. Decree 69에서 특징적인 것은 Decree 68에서 결혼지원센터 이외에 다른 단체가 국제결혼을 중개하는 것을 불법화했던 것에 더해, 이러한 불법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결혼이 확인되는 경우 이 결혼 자체를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규정한 것이다.

2. 국제결혼에 대한 국가 관리 강화

1) 상업적 국제결혼중개 금지

베트남 정부는 2002년 7월 10일 Decree No. 68/2002/NĐ-CP (Decree 68)를 공포하여 상업적 국제결혼중개를 전면 금지하였으며, 외국인과의 결혼등록 절차와 결혼지원센터의 역할 및 설립 조건 등을 명시하였다.

Decree 68은 여성과 아동에 대한 인신매매, 노동착취, 성적

5 베트남 공안부는 4월 26일 “베트남 여성과 어린이들의 불법 매매”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한국과 대만, 싱가포르 등으로 매춘이나 국제결혼을 위해 불법 송출되는 베트남 여성과 어린이의 수가 갈수록 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강력한 단속을 경고했다. 실제로 <조선일보>의 보도가 알려진 후 베트남 정부는 공안당국과 협조해 호치민시에서 운영되는 결혼정보회사가 베트남 여성을 강압적으로 한국 남성과 결혼하도록 하는지에 대해 조사를 벌였고, 7개 결혼중개업체를 적발하여 업체 대표 3명을 구속하고 달아난 업체 대표 4명을 수배했다(마경대 2006).

학대, 혹은 여타 개인적 착취를 위해 결혼을 이용하는 것과, 어떠한 형태로든 영리를 목적으로 결혼중개를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였다(제2조 2항). 그리고 국제결혼 등록은 성(省)급 인민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하고(제3조 1항), 결혼등록에 필요한 서류 및 공시 절차, 소요 기간, 결혼식 등 결혼등록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였다. 상업적 국제결혼중개가 금지된 가운데 베트남 여성연맹(Vietnam Women's Union)이 산하에 결혼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결혼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결혼 절차를 지원하는 역할을 부여받았다. 여성연맹 이외에 다른 단체가 결혼중개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며, 정부 관계 당국이 상업적 국제결혼중개 행위를 하는 이들을 적발할 경우 행정상의 제재를 가하거나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제78조 1항).

베트남 정부가 상업적 국제결혼중개를 금지하는 것은 이를 여성에 대한 인신매매의 한 형태로 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들은 더 나은 삶을 꿈꾸며 외국인과 결혼하지만, 대부분은 낮선 타국에서 모욕당하고 구타당하며 성적으로 착취당한다고 인식되고 있다.

2) 국제결혼 등록 심사 강화

2005년 2월 25일 발표된 Directive No. 03/2005/CT-TTg(Directive 03)는 Decree 68에서 국제결혼에 대한 국가 관리와 관련하여 법무부, 외교부, 공안부, 성(省)급 인민위원회 등에 해당 업무를 부여했던 것에 더해 이를 보다 구체화하고 새로이 외교부, 계획투자부, 문화정보부, 베트남 여성연맹 중앙위원회 등에 역

할을 지시하였다. Directive 03을 통해 법무부는 국제결혼 등록 서류의 접수와 검토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특히 지방 사법청이 제3자에 의한 결혼등록 서류 접수를 받지 않도록 지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또한 위장결혼 혹은 여성에 대한 인신매매나 여타 개인적 착취를 위한 결혼이라는 의심이나 고소, 고발이 있는 경우, 혹은 개인 정보나 결혼등록 서류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행해야 하는 관련자들에 대한 검증과 인터뷰에 대한 규칙을 공포할 의무를 부여받았다(제2조).

2006년 7월 21일에는 Decree 68의 일부 조항에 대한 수정 및 보완 내용을 담은 Decree No. 69/2006/ND-CP(Decree 69)가 공포되었다. Decree 69는 중개업체를 통한 결혼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베트남인과 외국인 간의 결혼등록과 관련된 규정과 절차를 대폭 강화했다는 특징을 가진다.

Decree 69로 인한 가장 큰 변화는 결혼등록 전 직접 인터뷰(face-to-face interviews)를 의무화하고 불법적인 결혼중개를 통한 것이 확인되는 결혼에 대해 결혼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Decree 68에도 재량 규정으로서 위장결혼, 여성에 대한 인신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결혼이라고 의심되거나 고소·고발이 있는 경우, 결혼 당사자의 인신이나 결혼등록 서류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방 사법청이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해 인터뷰 절차를 밟을 있다는 규정이 있었다(제16조 1항). 그러나 Decree 69는 결혼등록 접수 후 20일 이내에 의심이나 고소, 고발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국제결혼 당사자 남녀에 대해 직접 인터뷰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직접 인터뷰에는 남녀가 모두 참석하여야 하며, 결

혼의 자발성 여부, 서로 같은 언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지 여부, 서로에 대한 이해 정도를 확인한다(제4조 1항).

한편 Decree 68에는 결혼등록 거부 사유로 영원하고 평등하며 진취적이고 행복하고 지속 가능한 가족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 아닌 위장결혼인 경우, 그리고 여성에 대한 인신매매나 성적 학대 혹은 여타 개인적 착취를 위한 결혼인 경우가 규정되어 있었다(제18조). Decree 69에서는 여기에 불법적인 결혼중개를 통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와 민족의 미풍양속과 어울리지 않는 결혼 두 가지가 추가되었다(제18조 2항). 여기서 주목할 점은 불법적인 결혼중개를 통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이다. 서류 심사 및 인터뷰 결과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면, 이를테면 그 결혼의 자발성 여부와 관계없이 결혼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Decree 69는 Decree 68에서 결혼중개 사업을 불법화한 것을 넘어, 이러한 불법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결혼한 경우 이 결혼 자체를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는 상업적 국제결혼중개 금지가 그리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자 결혼중개업을 통해 결혼을 하더라도 국가가 전권을 휘두를 수 있는 결혼등록 과정에서 심사를 엄격히 하여 불법 결혼중개업체의 활동에 제약을 가하고자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준정부기관에 의한 결혼지원센터/상담지원센터 운영

2002년 공포된 Decree 68에 의해 베트남 여성연맹 산하 ‘결혼지원센터(Marriage Support Center)’⁶만이 국제결혼을 중개할 수 있게 되었고 국제결혼을 지원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결혼지원센터

는 인도주의와 비영리라는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여성에 대한 인신매매, 성적 학대, 여타 개인적 학취를 위해 결혼 지원을 이용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었다(제21조). Decree 68은 결혼지원센터에 크게 두 가지 역할을 부여하였다. 첫째, 베트남인과 외국인이 상대방 측의 개인, 가족, 사회 환경 등에 대한 문제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돋고, 자발적, 평등, 발전적, 행복한 결혼이 진행되도록 조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둘째, 요구가 있을 시 결혼등록에 필요한 서류 작성을 지원하는 것이다(제24조). 즉, 결혼지원센터가 영리 추구 목적으로 결혼중개 ‘사업’을 하는 것은 금지되었으며, 비영리 원칙하에 국제결혼 성사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주 임무였다. 이를 위해 다양한 수준(various levels)의 여성연맹들이 국제결혼이 많이 이루어지는 지역에서 5 Knows(언어, 문화와 관습, 법률, 배우자, 생활 방법(life skill))를 제공하는 교육 자료를 제작, 배포하기도 하였다(베트남 여성연맹 2012).

한편 2005년 Directive 03을 통해 베트남 여성연맹 중앙위원회에 결혼지원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역할이 부여되었다. 베트남 여성연맹 중앙위원회는 결혼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을 안내하고, 센터가 효율적으로 기능하여 베트남인과 외국인 간의 결혼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며, 외국인과 결혼하고자 하는 베트남 여성들이 많은 지역들에 결혼지원센터가 설립되도록 성(省)

6 Decree 68의 영문본에는 ‘marriage support center’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실제로 각 여성연맹이 설치한 기관의 명칭은 ‘국제결혼지원센터’, ‘국제결혼지원상담소’ 등으로 다양했다(‘결혼이민자를 위한 현지 사전교육’ 베트남 현지 코디네이터와의 인터뷰(2013. 7)).

급 여성연맹을 지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제8조).

2013년 3월 28일 발표된 Decree No. 24/2013/NĐ-CP(Decree 24)는 결혼지원센터를 ‘국외 요소를 지닌 혼인 및 가족 상담지원센터(The Center of Advisory and Assistance on Marriage and Family with Foreign Factors, 이하 상담지원센터)’로 재편, 그 법적 지위 및 활동 원칙을 명확히 하고 역할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상담지원센터의 역할을 살펴보면, Decree 68에서 부여된 역할 외에 ① 베트남인들에게 국제결혼 관련 문제 상담 제공, ② 베트남인들에게 결혼 상대방 국가의 언어, 문화, 관습, 결혼과 가족, 입국에 관한 법률 교육 및 상담 제공, ③ 외국인이 베트남의 언어와 문화, 관습, “혼인가족법”을 이해하도록 지원, ④ 베트남인이나 외국인이 결혼 상대방을 소개받고자 할 때 소개, ⑤ 국제결혼과 관련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의 합법적인 결혼 상담 지원 조직과 협력의 역할이 추가되었다. 또한 위의 ①과 ②의 규정에 따른 상담과 교육을 받은 베트남인에게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였다(제33조). Decree 24는 상담지원센터가 베트남 여성들에게 국제결혼과 결혼 상대방 국가에 대한 교육 및 상담을 제공하고 이에 대해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한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특정한 경우 지방 사법청이 결혼등록 서류에 상담지원센터가 발급한 확인서를 추가적으로 포함시킬 수 있게 했다는 점(제7조 3항)에서 그러한데, 이는 곧 국제결혼을 하려는 모든 베트남인이 결혼등록 전 상담지원센터가 제공하는 상담과 교육을 이수하는 것을 의무화 할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⁷

결혼지원센터/상담지원센터의 설립을 통해 합법적 국제결혼

중개 및 지원의 통로를 열어놓고 있는 데에서 베트남 정부가 중개 업을 통한 국제결혼을 금지 혹은 억제할 수는 없다는 인식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신 국제결혼에 대한 준비부터 결혼중개, 결 혼등록, 상대방 국가에 대한 교육 등 국제결혼 전반에 걸친 과정을 베트남 여성연맹이 운영하는 ‘준정부기관’을 통해 하게 함으로써 국제결혼을 국가의 관리 영역 안으로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⁸

3. 결혼지원센터/상담지원센터가 갖는 딜레마

베트남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국제결혼중개를 할 수 있는 곳은 Decree 68과 Decree 24에 의해 그 역할을 부여받은 결혼지원센 터/상담지원센터이다. 그러나 결혼지원센터는 현실적으로 제 기능 을 다하지 못하거나, 혹은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우

- 7 후술하겠지만 센터 사법청은 Decree 24가 제정된 이후 가장 빨르게 센터 여성 연맹과 한국의 유엔인권정책센터가 협력하여 운영하고 있는 ‘결혼이민자를 위한 현지 사전교육’ 프로그램의 이수증을 결혼등록 심사에 활용하고 있다.
- 8 이러한 국가의 개입 양상은 노동이주 정책에 있어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베트남은 1980, 90년대 급속한 경제 성장 이면에 존재하는 심각한 실업과 저소득 성장(low-income growth)을 겪으면서 해외 노동 송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적절한 국가 정책을 만들어오고 있다. 그런데 베트남의 노동 송출이 아시아 내 다른 송출국들과 구별되는 점은 국가가 노동 송출 프로그램을 만들고 지도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 매우 상세하게 개입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전국적으로 노동 송출에 대한 국가 관리를 관장하는 노동보훈사회부 산하 부처들은 노동 송출과 관련하여 베트남과 해외의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이에 따라 각각의 목적국에 맞는 노동 송출 계획을 세우며 해외 취업 알선업체들이 이를 실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노동이주자들을 위한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를 직접 지도하고 있다(국제이주기구 2005: 76-89).

선 결혼지원센터를 통한 결혼중개는 전체 국제결혼의 10%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결혼지원센터가 가장 먼저 설립되고 활발하게 활동한 호치민시에서도 1년에 100건 정도의 국제결혼만이 센터를 통해 이루어지고(보건복지가족부 다문화가족과 2008), 나머지 결혼은 대부분 상업적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성사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결혼지원센터가 만들어질 때부터 예상할 수 있는 문제였다고 할 수 있다. 우선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베트남 여성들이 얼마나 자발적으로 센터에 등록을 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있다. 결혼지원센터의 수가 많지 않을뿐더러 이미 상업적 국제결혼 중개 구조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여성들은 대부분 베트남 각지를 돌아다니며 여성들을 모집하는 현지 ‘마담’을 통해 결혼중개를 받고 있다. 또한 베트남 여성들에게 소개할 외국인을 모집하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이다. 베트남 여성과 결혼하기 위해 입국해 있는 외국인을 찾아내 센터에 등록시킬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센터를 홍보해서 베트남 여성과 결혼하라고 할 수도 없다.

이에 결혼지원센터가 찾아낸 해결책은 한국의 결혼중개업체와 협력하여 한국 남성들을 소개받는 것이었다. 이 경우 결혼지원 센터 입장에서는 비영리 원칙을 지키며 여성들에게 한국 남성들과의 결혼을 중개해준다고 할 수 있겠지만, 한국 남성의 입장에서 본다면 돈을 지불하고 등록한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베트남 여성을 소개받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즉, 결혼지원센터는 한국 업체의 베트남 현지 파트너가 되어 ‘마담’을 대신하는 것일 수 있다. 또한 이 경우 결혼지원센터가 상대방 남성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보장하기 어려울 수 있다. 실제

로 2008년에 호치민시 결혼지원센터를 통해 ‘합법적’으로 결혼하여 한국으로 이주한 베트남 여성이 한국인 남편의 성적 학대를 견디다 못해 이혼하고 베트남으로 돌아온 사례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커다란 파문이 일기도 하였다(주호치민 한국 총영사관 2008; Quang 2008).

결혼지원센터의 역량 부족 및 내적 딜레마를 통해 볼 때 베트남 정부는 대외적으로 결혼중개업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천명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국제결혼중개 시장을 인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상업적 결혼중개업에 의한 국제결혼을 금지하고자 했다면 베트남 여성들이 이 시장에 몰리는 혹은 유인되는 원인을 찾아내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이 함께 제시되어야 하고, 이러한 국제결혼 과정 및 이후 생활에서의 피해를 줄이고자 한다면 구조적 환경 변화와 더불어 베트남이 아닌 타국에 있으면서도 여성들이 자신을 보호하고 임파워링(empowering)할 수 있는 수단들이 제공되어야 한다. 베트남 여성연맹이 국제결혼을 빙자한 인신매매 방지 활동과 함께 소득 증대 및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일자리 창출·지원 운동 등도 펼치고 있지만 이러한 정책이 국제결혼과 관련한 여타 정책들과 조화를 이룰 때 베트남 결혼이주여성들의 ‘인격과 인권’이 존중받도록 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III 결혼이주여성의 역량 강화를 지향하는 필리핀

필리핀의 결혼이주 관련 정책은 필리핀 정부가 국가 발전 정책으

로 노동력 송출 정책을 채택한 아래 해외이주노동자 및 해외 필리핀인들과의 유대 및 연계를 지속하기 위해 발전시켜 온 정책들과 궤를 같이 한다. 필리핀 정부는 자국 결혼이주여성들을 해외 필리핀인 중 한 범주로 간주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이 여성들에 대한 피해 사례가 심각해짐에 따라 별도의 법을 만들어 결혼중개업을 통한 국제결혼을 차단하고 여성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1. 결혼이주 관련 정책의 형성 배경

1) 노동력 송출과 해외 송금 기반 경제 체제

필리핀은 1970년대 초반까지 일본에 이어 아시아의 경제를 이끄는 지역 내 경제 선도 국가였으나, 마르코스 정권(1965~1986)의 부패와 이에 따른 경제 구조의 왜곡 및 비효율의 누적은 장기 독재에 따른 정치적 불안정과 결부되어 필리핀 경제를 점차 부실화시켜 갔다(양승윤 외 2003, 139). 필리핀 정부는 높은 실업률, 심화되는 빈곤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70년대 중반부터 노동자 송출에 의존하면서 노동자들에게 부가적인 기술 훈련을 제공하고 외국에서 고용되어 일하는 노동자들로부터의 송금을 기반으로 하여 외화를 늘려가는 경제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파레냐스 2009, 91).⁹

9 그 결과 2011년 12월 현재 1,046만 명의 필리핀인들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43%에 해당하는 486만 명이 해외이주노동자이다. 2012년 해외 송금 액은 240억 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GDP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필리핀은 중국, 인도에 이어 세 번째로 해외 송금이 많이 이루어지는 국가이다(Nicolas 2013).

그런데 이러한 전략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부가 해외이주노동자들과 지속적으로 연계를 맺어 그들이 필리핀으로 송금을 보내오고 기술을 익힌 후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필리핀 정부는 1974년 노동법에서 필리핀 노동자들의 해외고용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각국으로 떠나는 이주민들을 등록, 모니터하기 위해 해외고용개발청(Overseas Employment Development Board)을 설치했다. 그리고 이주가 꾸준히 증가하자 1978년에는 필리핀 이주민들만을 위한 지역적 지원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한 독립기구인 이민국(Office of Emigrant Affairs, OEA)을 만들었으며, 1980년에는 이주자들의 복지와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OEA의 기능을 보다 확장하여 필리핀 이주공사(the Commission on Filipino Overseas, CFO)를 설립했다.

필리핀 이주공사는 특히 해외 필리핀인들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필리핀과 해외에서 이들의 이익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해외 필리핀인들의 이해와 복지를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실행하고, 모국과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연계를 지속, 발전시키는 포럼 기능을 하며, 이들이 필리핀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데 있어 관련 정부기관 및 사기업들 간 관계 강화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¹⁰

10 필리핀 이주공사 웹사이트(2013년 6월 20일 접속) 참고.

2) 해외노동이주의 성별화 및 국제결혼의 부상

정부 정책으로 공식화되어 있을 만큼 활발한 필리핀인들의 해외노동이주는 매우 성별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건설업 등 주로 생산직 노동자로 일하는 남성들과 달리 필리핀 여성들은 대개 가사노동자, 보모, 간호사 등 전통적으로 ‘여성의 일’로 간주된 업종(비공식/재생산 분야)이나 성 관련 산업(엔터테이너 등)에 집중적으로 취업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선진국에서 저임금 서비스노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것과 더불어 필리핀 정부가 의도적으로 이와 같은 직종들을 여성들에게 권장한 탓도 있다(여성부 2003, 40).

필리핀 여성들의 해외 취업이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주로 가사노동자로 종사하는 이 여성들에게 ‘값싸게 구입할 수 있는 하인(servants)’이라는 스테레오타입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스테레오타입과 함께 필리핀 정부의 여성노동자 송출 정책 그리고 더 부유한 나라로 가고 싶다는 여성들의 욕망이 합쳐지면서 필리핀 여성 이주노동자들이 더욱 손쉽게 “성 산업으로 미끄러져 들어가거나” 우편주문신부가 되었다고 지적된다(Chun 1996, 1172). 외국인과의 결혼은 초기 이주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해외로 나갈 수 있는 방법 일 뿐 아니라, 운만 따라주면 이주 후 안전한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필리핀 여성들에게 실용적인 선택지로 제시되었다. 선진국에는 취업 기회도 더 많기 때문에 정착 후 취업해서 돈을 벌거나 남편의 도움을 받아 필리핀에 남아 있는 가족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리라는 점도 매력적인 요인이었다.

필리핀 여성들이 꿈꾸던 이러한 가능성성이 현실화되어 필리

핀 사회에서 국제결혼이 증가한 데에는 우편주문신부 사업의 영향이 크다. 필리핀 정부는 우편주문신부 업체들이 젊은 필리핀 여성들을 외국 남성과 결혼하도록 모집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규들 (regulations)을 통과시켰으며, 이러한 조직적인 지원 덕분에 우편주문신부 사업은 급격하게 성장했다(Sassen 2002, 272).

3) 결혼이주여성들의 피해 가시화와 정책의 정비

필리핀 정부는 1989년까지 대부분의 우편주문신부 업체들을 허가해주었으나,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이 외국에서 당하는 피해들이 알려지자 우편주문신부 사업 전면 금지로 정책 기조를 바꾸었다.

아퀴노 대통령 재임 시기(1986~1992) 필리핀 여성들이 외국인 남편에게 당하는 학대와 국제결혼에서 겪는 피해 사례들이 필리핀 사회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특히 1989년 7월 9일 호주에서 필리핀 여성 제네로사 봉코딘(Generosa Bongcodin)이 호주인 남편에 의해 폭행, 살해당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우편주문신부 사업을 바라보는 필리핀 내 여론은 급속히 악화되었다. 이 충격적인 죽음은 결혼이주여성이 당하는 폭력 피해를 막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필리핀 사회에 일깨웠으며, 이는 이듬해인 1990년 6월 13일 “우편주문신부금지법(Anti-Mail Order Bride Law)”의 제정으로 이어졌다(APMM 2007, 3; Sassen, 2002, 272). 이 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외국인과의 결혼을 알선하는 행위, 즉 국제결혼중개업을 비롯하여 이와 관련된 다양한 행위들을 포괄적으로 불법화하고 있다.

필리핀 정부는 우편주문신부 사업으로 인한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으면서 법 제정 외에 다른 수단들을 통해서도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고자 했다. 그중 하나가 필리핀 이주공사(CFO)가 ‘외국인의 약혼자 또는 배우자로서 출국하는 국민들’에게 제공해오던 출국 전 오리엔테이션(Pre-Departure Orientation Seminar)에 상담서비스(Guidance and Counseling Services)를 추가한 것이다. 상담서비스는 결혼이주여성이 정보를 제공받은 상태에서 결정을 내리도록 (informed decision) 돋고, 결혼 생활 및 타국 생활 앞에 놓인 장애물들과 피해 상황들에 대해 미리 준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 이주 정책 기조의 변화: 인권 보호 강화

필리핀 정부의 이주 정책 기조는 1995년 플로르 콘템플라시온(Flor Contemplacion) 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 번 크게 변하였다. 이 사건은 싱가포르로 이주한 필리핀 여성 가사노동자 콘템플라시온이 동료 필리핀인과 고용주의 자녀를 살해한 죄로 기소된 데에서 비롯한다. 필리핀 라모스 대통령은 싱가포르 수상에게 이 사건에 대한 수사 재개를 요청했으나 결국 실패했고, 그 결과 콘템플라시온은 싱가포르에서 교수형을 당했다. 이로 인해 필리핀 사회에서 거센 사회적 항의가 일어났다. 이 사건은 노동 송출국과 수용국 간의 불평등, 즉 수용국에 비해 낮은 송출국의 경제력은 약한 정치력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드러낸 것이었지만, 동시에 필리핀 정부가 해외 필리핀인들을 보호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파레냐스 2009, 94).

이 사건을 계기로 필리핀 정부의 이주 정책 기조가 “자국 경제로 외화가 유입될 수 있도록 자국 시민들의 몸을 수출”(파레냐스

2009, 91)하는 것에서 해외 필리핀인들의 인권 보호를 중심에 놓는 것으로 변화했다. 이를 반영하여 탄생한 것이 1995년 제정된 “이주노동자 및 해외 필리핀인 법(the Migrant Workers and Overseas Filipino Act)”이다. 이 법은 기존의 경제 우선 관점에서 필리핀인의 존엄성과 인권 보호 관점으로의 변화를 담고 있다(Castle 외 2003, 168-169). 또한 해외 취업 정책을 한층 더 제도화하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들, 해외에서 재난을 입은 동포(Overseas Filipino in distress)의 복지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있어 좀 더 높은 수준의 기준을 확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국제이주기구 2005, 28). 이러한 맥락에서 2003년에는 “인신매매방지법(Anti-Trafficking in Persons Act of 2003)”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국제인권조약의 기준에 따라 인신매매 범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가해자에 대한 처벌 조항과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메커니즘을 포함하고 있다.

최근에는 아퀴노 대통령이 필리핀 가족들이 치러야 하는 사회적 비용을 무시한 채 사람들을 수출 상품과 외화벌이 수단으로 취급하던 것에서 벗어나, 국내 일자리를 창출하여 해외에서 일하는 것이 불가피한 일(necessity)이 아니라 선택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사람들이 해외이주노동자가 되기로 선택했을 때 그들의 보호를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로 삼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Nicolas 2013).

2. 결혼이주여성의 역량 강화

1)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사전 정보 제공 의무화

필리핀 정부는 결혼이주여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이들이 필리핀 이주공사(CFO) 주관의 출국 전 오리엔테이션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결혼이주여성들이 정보를 제공받은 상태에서 결정을 내리도록 돋고 국제결혼의 현실에 대해 준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외에서 영구 거주하기 위해 떠나는 필리핀인은 출국에 앞서 CFO에 등록을 해야 하는데, 등록 요건 중 하나가 CFO의 이주 자통합교육부(Migrant Integration and Education Division)에서 제공하는 출국 전 오리엔테이션(Pre-Departure Orientation Seminar, PDOS)을 이수하는 것이다. PDOS는 필리핀 이주자들에게 목적국에서의 적응 문제들을 미리 알려주어 해외에서의 거주를 돋기 위한 것으로, 이주 절차, 문화적 차이, 정착 문제, 고용과 사회적 안전 문제, 필리핀 이주자의 권리와 의무 등과 같은 사안들을 다룬다. PDOS의 상담서비스(Guidance and Counseling Services, GCS)에서는 일반적인 국제결혼 절차나 현황, 결혼이주자의 권리와 의무, 위급 시 이용할 수 있는 지원 네트워크 등에 대한 정보와 조언이 제공된다. 또한 일차적으로 적합한 결혼인지 여부, 본인과 가족의 의사, 중개혼 여부 등에 대해 인터뷰하고, 결혼 과정이 의심스럽거나 매매혼이라고 의심되는 경우 또는 가족들의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 등에는 CFO 본부¹¹에서 2차 인터뷰를 진행하여 통과 여부를 결정한다. 한국인과 결혼하는 경우에는 PDOS가 이를 동안 진

행되는데, 이에 대해 CFO 측에서는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단기 속성 중개결혼의 비율이 높고, 한국 남성과 결혼한 필리핀 여성들이 한국 사정은 물론 국제결혼 자체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그 이유로 들었다고 한다.¹² 상담서비스를 제공한 SMEF-COW나 PRISM은 참가수료증을 발급하고 이를 CFO에 제출하면 CFO 명의의 상담서비스 증명서가 발급된다.

CFO의 PDOS는 여권 발급 및 공항에서의 확인 절차와 연계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모든 결혼이주자들이 출국 전에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것으로 제도화되어 있다. 상담서비스를 마친 결혼이주여성은 여권과 비자를 신청한 후 CFO에 등록한다. 등록 시 상담서비스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등록의 증거로 여권에 CFO 스티커가 부착되어 나온다.¹³ 출국 시 공항 출입국 사무소에서 상담서비스 증명서와 등록 스티커를 확인하며 이 스티커가 없을 경우 출국을 제지당할 수 있다.

2) 국제결혼을 둘러싼 범죄 행위의 강력한 불법화

국제결혼을 둘러싼 각종 불법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을 명시한 법으로는 “우편주문신부금지법”과 “인신매매방지법”이 있

11 PDOS는 SMEF-COW(St. Mary Euphrasis Foundation-Center for Overseas Workers)와 PRISM(People's Reform Initiative for Social Mobilization) 두 기관이 CFO의 위탁을 받아 진행해왔는데, 2012년 7월 15일부터 CFO로 환수되었다(Dizon 2012).

12 필리핀 파견 국제결혼이민관과의 서면 인터뷰(2008. 11).

13 CFO는 이와 함께 CFO 정보집을 배포하고 있는데, 이 정보집에는 이주자 안내서, 입국 후 서비스 제공기관 전호번호부, 필리핀 대사관 및 영사관 주소록, 의견 제출 양식 및 출국 전 확인 목록이 포함되어 있다(Elissa 2013).

다. 필리핀에서 상업적 국제결혼중개 행위는 “우편주문신부금지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으며, 성매매 강요나 성적 착취, 강제노동을 목적으로 한 결혼중개로 간주되어 인신매매 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

1990년 6월 13일 공포된 “우편주문신부금지법(Anti-Mail Order Bride Law, Republic Act No. 6955)”의 핵심은 직·간접적으로 우편주문 방식이나 개인적 소개의 방식으로 필리핀 여성과 외국인과의 결혼을 알선할 목적의 사업체를 설립하거나 사업을 하는 행위, 즉 국제결혼중개 사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것이다(제2조 a항 1호). 이와 함께 국제결혼중개 사업을 조장할 목적으로 소책자 등 의 선전물을 광고, 출판, 인쇄, 배포하는 행위(2호), 필리핀 여성으로 하여금 영리를 위해 외국인과의 결혼 알선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나 협회의 회원이 되도록 소개, 유혹, 등록, 권유하는 행위(3호), 국제결혼중개 사업을 조장하기 위해 우편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4호), 신문, 잡지, TV, 라디오, 기타 미디어¹⁴ 또는 광고·출판사 등 의 광고 담당자 또는 담당관리자 등이 고의로 앞서 언급한 행위들을 허용하거나 동의하는 행위(동조 b항) 역시 불법이다. 즉, “우편주문신부금지법”은 국제결혼중개 사업뿐 아니라 이를 조장, 촉진하는 행위들까지 포괄적으로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2003년 제정, 공포된 “인신매매방지법(Anti-Trafficking in Persons Act of 2003, Republic Act No. 9208)”에 따르면 금전, 이익, 경제적 또는 기타 보상을 얻기 위해, 필리핀 여성을, 성매매, 포르

14 법 개정을 통해 인터넷상의 이메일이나 웹사이트도 미디어의 하나로 포함되었다 (Brago 2008).

노그래피, 성적 착취, 강제노동, 부채예속 등에 종사하게 할 목적으로 그/녀를 취득, 구매, 제공, 판매 또는 거래하려는 목적을 가진 결혼의 상대방으로 외국인에게 소개하거나 중매하는 행위(제4조 b 항), 그리고 앞서 언급한 것과 동일한 목적을 가진 결혼을, 실제로든 위장이든 제안하거나 계약하는 행위(동조 c항)는 인신매매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출국 전 요건을 갖추었다는 증명으로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상담 증명서, 등록 스티커 등을 허위로 혹은 위조하여 제작, 인쇄, 발행, 배포하는 행위(제4조 b항), 출국 전 등록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기관으로부터 허가증과 필수 출국 서류를 발행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기만 행위를 드는 행위(동조 d항) 등은 인신매매 조장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영리를 취하기 위해, 성매매 강요나 성적 착취, 강제노동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결혼을 중개 혹은 제안하는 행위는 인신매매 행위로 간주, 처벌되며, 모든 상업적 국제결혼중개는 잠재적인 인신매매 행위로 간주, 기소될 수 있다.

3. 사전 정보 제공 시점이 갖는 한계

필리핀 이주공사(CFO)의 출국 전 오리엔테이션이 결혼등록 후 출국 직전에 이루어진다는 점은 이 프로그램이 성과를 거두는 데 있어 일정한 한계를 내재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이미 정식으로 결혼등록이 이루어진 다음에 제공되기 때문에 정보를 제공받은 상태에서 결혼 결정을 내리도록 한다는 애초의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며, 결혼 과정 자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및 불법 행위를

견제하기에는 이미 때가 늦었다. 또한 상담 시 문제가 발견된다 하더라도 상담서비스 증명서 발급을 거부하여 출국을 가로막는 것은 결혼을 취소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수 있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 및 인권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CFO도 인식하고 있는 바 문제 해결을 위해 결혼등록 이전에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한다. 여기에는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결혼 전 상담은 물론 상대 외국인의 출신국 정부에게 미혼증명서 발급 전에 결혼 전 오리엔테이션이나 상담을 시행하라고 요구하는 것까지 포함된다.¹⁵

주필리핀 한국 대사관의 영사 면담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는 측면이 있다. 주필리핀 한국 대사관은 2007년 11월 한국인과 결혼 대상자 필리핀인을 대상으로 한 영사 면담 시행 시점을 기존의 배우자비자 신청 시에서 미혼증명서 신청 시로 변경하였다. 이는 결혼 허가를 받고 결혼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영사 면담을 실시하여 국제결혼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 및 필리핀의 결혼 절차를 설명할 기회를 갖고자 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한국인 결혼 희망자들의 피해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¹⁶ 새로운 영사 면담 방식이 필리핀 여성들의 인권 보장보다는 한국 남성들의 피해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지만 이전 방식보다 진일보한 것만은 사실이다.

15 필리핀 이주공사 이주지통합교육부 직원과의 서면 인터뷰(2008. 11).

16 주필리핀 한국 대사관 비자 담당 영사와의 서면 인터뷰(2008. 11).

IV 목적국의 결혼이주 관련 정책과의 관계

1. 상업적 결혼중개업 관련 정책 차이의 효과

이 글에서 다룬 베트남과 필리핀을 비롯하여 결혼이주여성 출신국들은 대부분 상업적 국제결혼중개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 출신국들이 결혼중개업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결혼중개업을 통한 국제결혼 피해 사례들, 때로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나 남편에 의한 살해 등과 같은 극단적인 사례들이 알려지면서 중개업체를 통한 국제결혼 자체가 여성의 인권 침해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성의 상품화 자체만으로도 여성의 인격과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여성의 몸을 그녀가 속한 국가, 민족으로 환치시키는 가부장제의 일반적인 경향에 따라 결혼중개 과정에서의 매매흔적 성격 그리고 결혼이주여성들에게 가해지는 멸시와 폭력 등이 곧바로 자국에 대한 모욕과 폭력으로 간주되어 쉽게 출신국 국민들의 공분을 사는 면도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¹⁷

반면 아시아 지역 주요 결혼이주 목적국들은 대개 상업적 결혼중개를 합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국제결혼중개 시장을 키워온 면이 있다. 일본, 한국 등

17 실제로 베트남 미디어에서는 국제결혼이 ‘베트남의 이상(민족주의, 가부장제, 남성성)에 대한 위협’, ‘베트남 여성에 대해 배타적인 접근권을 가지고 있는 베트남 남성들에 대한 도전’, ‘높은 비율의 가정폭력, 갈등으로 인한 불행한 결과’ 등의 이미지로 재현되고 있다고 한다(최호림 2013; Bélanger, Khuât & Trần 2013).

에서는 결혼중개업을 허용할 뿐만 아니라,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장가 못 간 농촌 총각들’을 위해 ‘외국인 신부’를 들여오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¹⁸ 한국에서 결혼중개업을 통한 국제결혼이 사회적으로 용인 혹은 묵인되는 데에는 이 현상이 결혼 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회적 주변부 남성의 일이자 이들의 배우자로 한국에 오는 여성들 또한 주변부 여성이라는 생각 때문에 이 현상이 특정 계급의 이슈로 간주되어 한국 사회 변화의 핵심에 놓인 중심적 의제로 설정되지 않은 탓이 크다고 지적된다(김현미 2006, 19).

이렇게 결혼이주여성들의 출신국과 목적국에서 결혼중개업에 대한 입법 태도가 다른 것은 양국 모두의 정책 집행에 있어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목적국에서 합법적으로 국제결혼을 원하는 남성들을 모아 출국한 결혼중개업체(자)는 여성들의 출신국에 도착한 순간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것이 된다. 목적국의 중개업체가 직접 출신국에 오지 않고 현지 중개업체(자)와 제휴하는 형식으로 사업을 운영한다 해도 이는 출신국에서 불법으로 규정된 행위를 부추기는 것에 다름 아니다. “결혼중개업관리법”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외국 현지법령을 위반한 경우 외교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

18 1980년대 농가후계자의 결혼난을 해소하기 위해 일본의 지방자치단체가 깊숙이 개입하여 필리핀 여성들을 들여온 ‘행정주도형 국제결혼’은 그 효시라고 할 수 있다(황달기 1993). 한국에서는 1990년대 초반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을 시작한 이래,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어민 국제결혼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통해 예산을 책정하여 국제결혼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여기에서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국제결혼중개업체들이며,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업체 간의 과정적인 결탁이 이루어지기도 한다(이주여성정책네트워크·민주노동당·최순영 의원실 2007).

보하고 이를 다시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제 11조), 이는 현지에서 처분을 받았을 때라야 적용되는 것이어서 실제적인 효과를 거의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결혼중개업관리법” 제정 시에는 외국 현지법령을 형사법령에 국한하고 있었기 때문에 형법이 아니라 “혼인가족법”的 시행령(Decree 68)에서 상업적 결혼중개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베트남의 경우 설사 결혼중개업체가 베트남에서 법률 위반 처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한국에서는 아무런 문제 없이 영업을 계속할 수 있었다.¹⁹ 또한 외국 현지법령 위반이 아니라 이를 통해 처분을 받았을 때라야 제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출신국 정부의 단속만 잘 피하면 한국의 관련법에는 저촉되지 않은 채 영업을 이어갈 수 있다. 이는 출신국 정부의 법과 정책을 노골적으로 무시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일 뿐 아니라, 결혼중개업이 야기하는 불법 행위나 인권 침해에 대한 규제를 둘러싼 정부 간 협력을 어렵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

결혼이주여성 출신국에서 결혼중개업이 불법화되어 있음에도 결혼중개를 하는 것은 여성들을 더욱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한다. 단속을 피해 짧은 기간 안에 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해 집단 맞선과 속성 선택 등이 강제되면서 여성들은 상대방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결혼에 내몰리고 결혼중개업체(자)에게 더욱 예속적인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다. 즉, 불법 중개업체와 만나게 되면서부터 여성들은 한편으로는 정부의 단속을 피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개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를 감내해야 하는 상

19 2010년 개정을 통해 ‘현지 형사법령 위반’이 ‘현지 형사법령 또는 행정법령 위반’으로 변경되었다.

황에 놓일 수 있는 것이다.

2. 목적국의 출입국 관리 정책이 갖는 영향력

결혼이주의 성격과 실태에는 결혼중개업뿐 아니라 목적국의 출입국 관리 정책이 보다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대만 남성과 베트남 여성 간의 결혼 추이는 대만 정부의 사증 발급 정책의 변화와 궤를 같이 하였으며, 한국에서도 2011년 결혼 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기준을 강화하자 국제결혼 건수가 감소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1) 국제결혼 이외 목적의 사증 발급을 통한 출신국 정책 무력화

필리핀 이주공사(CFO)의 출국 전 오리엔테이션 및 상담서비스는 ‘외국인의 약혼자 또는 배우자로 출국하는 국민들’, 즉 공항 출국 시 배우자비자를 통해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목적국에서 필리핀인 배우자에 대해 배우자비자가 아닌 다른 목적의 비자, 즉 CFO에 등록할 필요가 없는 출국 경로를 통해 입국할 수 있도록 허용해준다면 이들은 CFO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목적국의 비자 발급 정책에 따라 CFO의 결혼이주여성 보호 정책에 균열이 발생하는 것이다.

실제로 주필리핀 한국 대사관은 필리핀 여성이 배우자비자를 신청할 때 CFO 교육이수증을 필수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다가 2005년 8월 22일 이후 한동안 이 서류를 요구하지 않았다. 당시 대사관은 “CFO 교육이 필리핀인 배우자의 한국문화 이해라는 좋은 취지

에도 불구하고 일부 현지 공무원에 의해 악용되는 측면이 많다”는 점을 그 이유로 제시했다.²⁰ 그러나 실상은 한국 남성들이, CFO가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내용만을 교육해서 그 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한국에 오거나 결혼을 포기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자신들의 배우자가 CFO 교육을 받지 않고 한국에 입국할 수 있게 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이었다.²¹ 그 결과 이 시기 동안 필리핀 여성들이 배우자비자 대신 공항에서 CFO 교육이수증을 확인받을 필요가 없는 관광비자로 일단 한국에 입국한 후 체류 자격을 변경하는 사례가 상당수에 달했다. 이는 자국민들의 민원에 떠밀린 목적국 정부의 출입국 관리 정책이 결혼이주여성 출신국 정부의 자국민 보호 정책을 무시하고 무력화시킨 사례라고 할 수 있다.²²

2) 비자 발급 요건을 통한 결혼이주여성 지원

이와 달리 한국 정부의 비자 발급 정책이 결혼이주여성 지원에 도움이 되는 사례도 있다. 현재 여성가족부는 위탁용역을 통해 베트남 호치민시, 하노이, 꺼터, 필리핀, 몽골에서 ‘결혼이민자를 위한 현지 사전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 남성과의 결

20 주필리핀 한국 대사관 웹사이트 2008. 8. 24 게시글.

21 주필리핀 한국 대사관 비자 담당 영사와의 서면 인터뷰(2008. 11).

22 주필리핀 한국 대사관은 2007년부터 다시 필리핀인 배우자의 비자 발급 요건에 CFO 교육이수증을 포함시켰다. 이는 현지법령을 지키자는 뜻에서라고 한다. 또한 CFO 교육이수증의 원본 여부를 CFO 본부와 협력하여 검증하고 있으며,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면만이 아니라 긍정적인 면도 교육할 수 있도록 CFO에 한국에 관한 정보를 많이 제공하고 있다(주필리핀 한국 대사관 비자 담당 영사와의 서면 인터뷰(2008. 11)).

혼이 결정된 여성들 중 한국으로의 입국 비자 신청 이후 프로그램 참가를 희망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 이수와 비자 발급을 연계시킴으로써 결혼이주여성의 초기 정착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베트남의 경우 호치민시에서는 2007년 10월부터, 하노이에서는 2009년 8월부터, 그리고 남부의 컨터에서는 2011년 10월부터 ‘결혼이민자를 위한 현지 사전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호치민시와 하노이에서는 1일 8시간, 컨터에서는 3일 24시간 동안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에서는 한국 정보 일반, 한국 문화, 화폐·교통수단·관공서 등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의 지원시스템 및 법, 기초 한국어 교육 등이 제공된다.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들에게는 수료증이 발급되는데, 하노이에 위치한 주베트남 한국 대사관에서는 2009년 9월부터 이 수료증을 제출해야만 여성들이 비자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²³ 베트남의 다낭 이북 지역 출신 여성으로서 주베트남 한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 모든 베트남 결혼이주여성들이 이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CFO가 제공하는 출국 전 오리엔테이션과는 제공 주체나 형식이 다르기는 하지만, 출국에 앞서 한국 입국 후 초기 정착 과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받게 한다는 점에서 결혼이주여성들에게는 유사한 지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한국 정부의 비자 발급 정책과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결합시키는 것을 다른 결혼이주여성 출신국 소재

23 주베트남 한국 대사관 웹사이트 2009. 8. 4 게시글.

한국 대사관에서도 활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²⁴

3. 결혼이주여성 지원을 위한 국가 간 협력

결혼이주여성이 목적국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과 피해를 줄이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돋는 것은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과 목적국 정부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이다. 이를 위해 국제결혼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 간 MOU 체결, ‘결혼이민자를 위한 현지 사전교육’ 공동 운영 등 다양한 형태로 협력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2010년 10월 21일 한국의 여성가족부와 베트남 여성연맹 간 “국제결혼 건전화 및 여성발전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가 체결되었다. 이에 따라 양국은 결혼이민 예정자 대상 한국 입국 전 사전정보 제공 프로그램 공동운영, 불법 결혼중개업체 단속 강화, 정보교환 등을 추진하게 되었다.²⁵ MOU를 통해 ‘결혼이민자를 위한 현지 사전교육’을 두 기관의 협력하에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결혼 상대방 간 결혼 전 신상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협력하기로 한 것은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지원 강화라는 측면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그렇지만 ‘국제결혼 건전화’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불분명한 측면이 남아 있는 것 같다. 여성가족부는 ‘국제결혼중개업체의 등록기준 및 불법행위의 처벌규정 강화

24 ‘결혼이민자를 위한 현지 사전교육’ 베트남 현지 코디네이터와의 인터뷰(2013. 7).

25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13. 10. 19). “한국-베트남 정부 차원 국제결혼 관련 양해각서 첫 추진.”

등 결혼중개업체의 관리 감독 강화'를 강조하고 있는데, 상담지원 센터를 통한 결혼중개만을 합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베트남의 입장에서는 결혼중개업체에 대해 어떠한 대응을 취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하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한편 앞서 언급했듯이 베트남 컨터에서는 2011년 10월부터 여성가족부의 위탁용역으로 '결혼이민자를 위한 현지 사전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양국의 결혼이주여성 관련 기관의 협력 관계를 잘 보여준다는 점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프로그램은 2010년 10월 여성가족부와 베트남 중앙 여성연맹이 MOU를 체결한 후, 여성가족부의 위탁을 받은 한국의 NGO인 유엔인권정책센터와 베트남 여성연맹 산하 컨터 여성연맹이 MOU를 체결하면서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컨터 여성연맹은 '결혼지원상담센터'에 이 사업의 실행을 맡겼다. 이 프로그램은 호치민시와 하노이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심화하여 3일 간의 교육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베트남 남부 지역 각 성(省)의 사법청에 결혼등록을 했거나 호적 결혼 기입을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프로그램의 홍보는 유엔인권정책센터와 컨터 여성연맹이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 유엔인권정책센터는 주호치민 한국 총영사관에 공증 및 비자 신청을 하러 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고, 컨터 여성연맹은 결혼등록을 관장하는 컨터 사법청 및 메콩강 유역 여성연맹에서 홍보를 하고 있다. 강사진도 유엔인권정책센터와 결혼지원상담센터가 함께 구성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외 2012, 8-25). 특히 주목할 점은 이 프로그램을 컨터 사법청이 결혼등록 과정에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혼에 문제

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를 들어 나이 차가 많이 나거나 이혼 경력이 있는 경우 등에 컨터 사법청은 여성에게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수료증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²⁶

2012년 3월 13일에는 여성가족부와 필리핀 이주공사(CFO)가 “국제결혼 건전화와 결혼이민자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MOU에서 여성가족부와 CFO는 한국행 결혼이민자에 대한 필리핀 현지 사전교육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하고, 결혼 전 정확한 신상정보 교환 및 불법적인 국제결혼 관행 개선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필리핀 결혼이주여성들의 정착과 적응 문제를 지원하는 데 함께 협력하여 이들의 역량 강화를 촉진하기로 하였다.²⁷ MOU 체결 이전에도 필리핀에는 2008년에 국제결혼이민관이 파견되어 CFO의 출국 전 오리엔테이션 중 ‘한국 생활 개요와 생활 한국어’ 시간을 직접 진행했으며,²⁸ 최근에는 ‘결혼이민자를 위한 현지 사전교육’에서 이틀간의 오리엔테이션 중 하루를 맡아 한국 사회와 문화, 한국어, 이민 관련 법령 및 지원 기관 소개 등을 8시간에 걸쳐 담당하고 있다.²⁹

26 ‘결혼이민자를 위한 현지 사전교육’ 한국 코디네이터와의 서면 인터뷰(2013. 8).

27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12. 3. 12). “한국-필리핀 국제결혼 건전화와 결혼이민자 지원을 위한 MOU 체결.”

28 필리핀 파견 국제결혼이민관과의 서면 인터뷰(2008. 11).

29 ‘결혼이민자를 위한 현지 사전교육’ 필리핀 현지 코디네이터와의 서면 인터뷰(2013. 7).

V 결론

이 글에서는 베트남과 필리핀의 결혼이주 관련 정책에 대해 그 형성 과정을 역사적으로 맥락화하고, 정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후, 한계를 논하였다. 또한 한국의 결혼이주 관련 정책을 살펴봄으로써 출신국과 목적국 정책 간 경합과 협력이 결혼이주여성들의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결혼이주 목적국 정책뿐 아니라 출신국 정책, 그리고 이 둘 간의 관계가 여성들의 국제결혼 및 이주 경험을 구조화하는 양상을 입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베트남의 결혼이주 관련 정책은 국가 기구를 통해 국제결혼에 대한 제반 사항, 즉 결혼의 적격성 여부 판단, 국제결혼증개, 결혼이주여성 지원 등을 포괄하려 한다고 요약할 수 있다. 베트남 정부는 모든 국제결혼 당사자 남녀에 대해 직접 인터뷰를 실시하여 문제 있는 결혼을 걸러내고자 하며, 불법 결혼증개업체를 통한 결혼이 확인되는 경우 결혼등록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여성들에 대해서는 베트남 여성연맹이 운영하는 상담지원센터를 통해 외국인 남성을 소개받고 국제결혼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받게 함으로써 이들을 결혼증개업이 아닌 ‘준정부기관’의 관리 아래 두려 하고 있다. 베트남의 결혼이주 관련 정책은 국제결혼 전반에 대한 국가 관리 영역을 확장하는 식으로 형성되어 온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국가가 시장을 대신하여 국제결혼증개를 포섭하려는 시도로도 읽을 수 있다.

필리핀의 결혼이주 관련 정책은 “우편주문신부금지법”과 “인

신매매방지법”을 통해 상업적 국제결혼중개 행위 및 인신매매 행위를 처벌하는 것뿐 아니라, 외국인과 결혼하여 필리핀을 떠나는 모든 필리핀인 배우자들이 이주와 정착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필수적으로 제공받도록 하는 것이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필리핀 이주공사의 출국 전 오리엔테이션과 상담서비스는 결혼이주여성의 주요 목적국에 대해 특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도 모든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시행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어떠한 경로와 과정을 거쳐 국제결혼을 했든 그녀가 목적국에서 생활하는데 도움이 될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면서, 이를 통해 그녀가 결혼 과정에서 이미 불평등 혹은 착취를 당했다 하더라도 그 과정을 돌이켜보고 최소한의 대비책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필리핀의 결혼이주 관련 정책은 해외에서의 결혼 생활에 있어 결혼이주여성의 역량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국제결혼을 통한 여성들의 이주는 목적국의 결혼 시장에서 주변화된 남성들의 수요와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찾아 보다 잘 사는 나라로 이주하려는 출신국의 여성들의 필요가 결합하면서 이루어져왔지만, 베트남과 필리핀의 경우를 통해 볼 때 이 둘을 매개하는 상업화된 국제결혼중개가 많은 문제와 피해를 유발하고 출신국의 결혼이주 관련 정책의 형성을 유도해왔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목적국의 출입국 관리 정책은 모든 결혼이주여성들이 거쳐야 하는 관문이라는 점에서 결혼이주여성 지원 정책과 결부되었을 때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또한 출신국과 목적국의 결혼이주여성 관련 기관의 협력은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지원 제공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결혼이주 목적국뿐 아니라 출신국의 결혼이주 관련 정책은 국제결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를 예방, 구제하고 국제결혼과 관련된 다양한 당사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결혼이주여성과 관련하여 본다면 국제결혼 과정에서 안전한 이주와 목적국 사회에서의 안정적인 정착이 보장되도록 출신국과 목적국 간 정책의 조율과 협력이 필요하다. 결혼이주여성의 안전한 이주를 위해서는 결혼중개업체의 착취와 인권 침해 근절, 한국 사회 및 결혼 상대방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은 상태에서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의 보장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한국인 가족과 한국 사회의 타인과 타문화에 대한 감수성 및 수용성 제고 없이 일방적으로 결혼이주여성에게 한국 사회로의 적응을 강조하는 것을 지양하고, 이들을 가족 내 존재로서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의 권리를 지닌 주체로 인정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한국인 남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고 가족 내 의무를 충실히 할 때만이 안정적인 체류를 보장받을 수 있는 현재의 결혼이주여성의 체류 관련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더불어 결혼증명 제야에서의 업서이

<http://www.gov.ph/2003/05/26/republic-act-no-9208-s-2003/>(2013년 6월 15일 접속).

국가인권위원회. 2007.『고용허가제 시행이후 몽골과 베트남의 이주 및 국제결혼과정에 나타난 인권침해 실태조사』.

국제이주기구. 2005.『A Survey on the Labour Emigration Management Systems of 12 Countries of Origin to the Republic of Korea: Indonesia, Mongolia, Philippines, Sri Lanka, Thailand, Vietnam, Cambodia, China, Kyrgyzstan, Pakistan, Timor Leste, and Uzbekistan』.

권미주. 2010. "인신매매적 국제결혼이 가지는 문제와 그 해결을 위한 법률적 과제."

〈성착취와 인신매매관련 법제화를 위한 정책토론회〉(2010. 5. 4). 국회의원

김춘진.

- 주호치민 한국 총영사관. 2008. “[10. 28] 현지 신문기사 요약.” <http://vnmoft.hochiminh.mofa.go.kr/korean/as/vnm-hochiminh/information/newspaper/index.jsp> (번호 217)(2013년 6월 20일 접속).
- 채승우. 2006. “베트남 처녀들, “희망의 땅, 코리아로”.” 『조선일보』(4월 21일).
- 최호림. 2013. “베트남의 결혼이주와 귀국 이주여성.” 〈2013년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열린 강연〉 시리즈 제5회 “아시아 시대, 중심을 가다”〉(2013. 6. 4).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 통계청. 2013. “2012년 혼인·이혼통계” 보도자료(2013. 4. 23).
- 파레냐스, 라셀 살라자르, 문현아 역. 2009. 『세계화의 하인들: 여성, 이주, 가사노동』. 도서출판 여의연.
- 한국다문화기족정책연구원·외환은행나눔재단. 2011. 『결혼이주자 본국 친정가족과 결혼희망(예정)자의 국제결혼 인식 및 국제결혼 중개 시스템 실태조사』. 사단법인 한국다문화기족정책연구원.
- 한국염. 2006. “결혼이민자가족 정부의 정책방향 고찰: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인가? 원인전략 가능한가?” 〈정부의 결혼이민자가족 정책 “다시보기”〉(2006. 6. 12).
- 국제이주기구 서울사무소·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이주여성인권연대·한국여성의전화연합·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 황달기. 1993. “일본 농가후계자의 ‘국제결혼’.” 『일본학보』 Vol. 30, No. 1, 467-491.

- APMM(Asia Pacific Mission for Migrants). 2007. *Foreign Brides Research: Psychosocial Profile and Perspectives of Foreign Brides*.
- Bélanger, Danièle, Khuatl Thu Hồng and Trần Giang Linh. 2013. “Transnational Marriages between Vietnamese Women and Asian Men in Vietnamese Online Media.” *Journal of Vietnamese Studies*. Vol. 8, No. 2, 81-114.
- Brago, Pia Lee. 2008. “Pinoys warned of Korea drive vs mail-order brides.” *Philippine Star*(18 May).
- Castles, Stephen & Mark J. Miller. 2003. *The Age of Migration: International Population Movements in the Modern World*(3rd ed.). The Guilford Press.
- Chun, Christine S. Y. 1996. “The Mail-Order Bride Industry: The Perpetuation of Transnational Economic Inequalities and Stereotypes.” *University of Pennsylvania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Vol. 17, Issue. 4, 1155-1208.
- Dizon, Ma. Kimberly. 2012. “Workshop for Public Officials In-charge of Marriage-based Immigrant Women.” 〈주요 결혼상대국 결혼이주여성 담당공무원 초청워크샵〉(2012. 5. 20~23). 여성가족부.
- Elissa, Maria. 2013. “필리핀에서 한국으로의 이주 동향.” 조영희 엮음. 『국내 이주민 출신국가의 한국행 이주동향』. IOM이민정책연구원.
- Kofman, Eleonore, Annie Phizacklea, Parvati Raghuram and Rosemary Sales. 2000. *Gender and International Migration in Europe: Employment, Welfare*

- and Politics*. Routledge.
- Nicolas, Imelda M. 2013. "The Philippines – Gender Dimensions Of Our International Migration: The Impact On Our Women, Children & Families." 〈Asia Pacific Regional Preparatory Meeting — ESCAP Roundtable Discussion II〉(2013. 5. 30).
- Piper, Nicola. 2007. "젠더 관점에서 이주-발전 연계 재고하기: 아시아로부터의 통찰." 한국여성연구원 3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지구지역 시대 지식생산과 여성연구의 도전〉(2007. 11. 1~2).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 Piper, Nicola and Mina Roces. 2003. "Introduction: Marriage and Migration in an Age of Globalization." Nicola Piper and Mina Roces (eds.). *Wife or Worker?: Asian Women and Migration*. Roman & Littlefield Publishing, Inc.
- Quang, Thi. 2008. "Brides on sale." *Thanh Nien News*(27 October).
- Sassen, Saskia. 2002. "Global Cities and Survival Circuits." Barbara Ehrenreich and Arlie Russell Hochschild (eds.). *Global Woman: Nannies, Maids, and Sex Workers in the New Economy*. Owl Books.

베트남 법무부 웹사이트. <http://www.moj.gov.vn>
주베트남 한국 대사관 웹사이트. <http://vnm-hanoi.mofa.go.kr>
주호치민 한국 총영사관 웹사이트. <http://vnmm-hochiminh.mofat.go.kr>
필리핀 이주공사 웹사이트. <http://www.cfo.gov.ph>
주필리핀 한국 대사관 웹사이트. http://embassy_philippines.mofa.go.kr

필자 소개

위선주 Wi, Sunju

서울대학교 여성학협동과정(Interdisciplinary Program in Gender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박사수료

논저 『아시아 결혼이주체제에서의 출신국 정책 연구: 필리핀, 베트남, 몽골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자녀의 성·본 변경을 통해 본 부계가족의 정상성과 어머니의 지위”
(공저)

이메일 yurang@gmail.com